

제주특별자치도·건설단체·건설 대기업 간 상생협약서

제주특별자치도(이하“제주자치도”라 한다)와 해외건설협회,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,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,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(이하“건설단체”라 한다), 현대건설, 대우건설, DL이앤씨, 포스코이앤씨, 호반건설, 한화 건설부문, 태영건설, 금호건설, 동부건설, HJ중공업(이하“건설 대기업”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상생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업무협약은 제주자치도, 건설단체 및 건설 대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건설 대기업과 제주 건설업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의성실 원칙) 제주자치도, 건설단체, 건설 대기업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한다.

제3조(협력내용) 협약 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협약 당사자는 제주 건설업체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건설 대기업과 제주 건설업체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.
2. 제주자치도는 제주 건설업체의 역량 강화 및 건설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, 건설 대기업이 제주지역 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3. 건설단체는 제주 건설업체의 도외·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, 시장 개척비 지원 및 컨설팅 실시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.
4. 건설 대기업은 제주 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및 도외·해외 건설시장 동반 진출에 적극 노력한다.

제4조(효력 및 유효기간) ①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,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.

③ 본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,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1월 8일



도지사 오영훈

오영훈



회장 박선호

대 박선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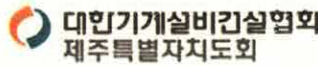
회장 김기춘

대 김기춘



회장 백상훈

백상훈



회장 현동수

현동수



대표이사 윤영준

대 윤영준



대표이사 백정완

대 백정완



대표이사 마창민

대 마창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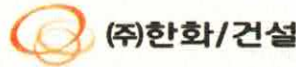
대표이사 한성희

대 한성희



대표이사 변부섭

변부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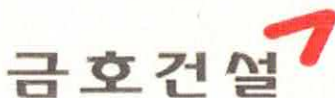
대표이사 김승모

김승모



대표이사 이재규

대 이재규



대표이사 서재환

대 서재환



대표이사 윤진오

대 윤진오



대표이사 홍문기

대 홍문기